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4호라목의 ①과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(채무조정 개시 시점 “요주의” 여신)

1.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경우 “정상”으로 분류 가능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(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)하면 “정상”으로 분류 가능

②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(채무조정 개시 시점 “고정이하” 여신)

1.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/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“고정”으로 분류변경 가능

2.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/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“요주의”로 분류변경 가능

3.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“요주의” 분류변경 후 1년이상

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“정상” 분류 가능

4.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 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(상환 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)하면 “정상”으로 분류 가능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별표3> 자산건전성 분류기준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가계여신의 건전성 분류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 재조정된 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.</p> <p>①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(채무조정 개시 시점 “요주의” 여신)</p> <p>1.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경우 “정상”으로 분류 가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②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(채무조정 개시 시점 “고정이하” 여신)</p> <p>1. 채무상환이 확실히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/4이상 또는</p>	<p><---->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(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)하면 “정상”으로 분류 가능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1 -----</p> <p>-----</p>

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
경우 총 채권액을 “고정”으로 분
류변경 가능

2.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
서 전체 상환기간의 1/3이상 또는
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
경우 총 채권액을 “요주의”로 분
류변경 가능

3.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
서 “요주의” 분류변경 후 1년이상
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“정
상” 분류 가능

<신 설>

③ · ④ (생 략)

2. -----

3. -----

4.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
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
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
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
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
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
이행(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
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)하면 “정
상”으로 분류 가능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서 민 금 용 과	
연 락 처	(02) 2100-2612